

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5] <개정 2015.3.3.>

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(제347조제7항 관련)

1.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
2.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,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3.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4.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5.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6.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
7.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
8.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
9.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
10. 제3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콜거래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를 한 경우
11. 제34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금중개를 한 경우
12. 제34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13.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
14.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